

#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07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김 건 · 유용원  
이만희 · 최보윤 · 조지연  
서범수 · 이달희 · 임종득  
주호영 · 정성국 · 한기호  
박정훈 · 이인선 · 안철수  
성일종 · 박준태 의원  
(1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.

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, 화재 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·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

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 신설 등).

##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종료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화재조사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.

1.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
2.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·감정기술 개발
3.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
4.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실시 여부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소방본부에 시·

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.

1.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
  2.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실시 여부
 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및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,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화재조사의 실시) ① · ②<br>(생    략)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화재조사의 실시) ① · ②<br>(현행과 같음)<br><u>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종료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.</u><br>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</u>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| <u>제17조의2(화재조사심의위원회)</u><br><u>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.</u><br><u>1.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</u><br><u>2.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·감정기술 개발</u><br><u>3.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</u><br><u>4.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</u>                |

의 실시 여부
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 
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  
항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
하기 위하여 시·도 소방본부  
에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 
둔다.

1.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  
전을 위한 정책 수립

2.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  
의 실시 여부

3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 
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  
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 
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및 시·  
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 
자격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